

2009. 9. 23. (수) 10:00

제161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

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2.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6
3.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11

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9. 7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9. 21. 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34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나, 관계 법령이 '06.1.1부터 전면개정(법률 제7297호, '04.12.31)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
- 자연경관 보전 및 청정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의 전면개정 시행(’06.1.1)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10조).
- “자연경관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추가하고, 종전의 용어(“자연경관 보전”, “자연경관 보전지역”, “주요 도로변 가시지역”)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여 ‘호’의 순서를 이동함(안 제2조).
- 현행 조례 제9조(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)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제한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0조(자연경관의 적정 관리)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,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9조, 제10조).
- 현행 조례 제12조(자연경관 보전단체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경비의지원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1조(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)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, 각각의 조문 순서를 바꾸어 해당 내용에 맞게 문맥 등을 정비함(안 제11조, 제12조).
-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,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는 등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군민적 관심과 기대에

부응하며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관위주의 인적구성을 탈피, 민간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함(안 제13조).

-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,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조례안은 '06. 1. 1부터 「자연환경보전법」(법률 제7297호)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자연경관 보전 및 청정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“자연경관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, 종전 “자연경관보전”, “자연경관 보전지역”, “주요 도로변 가시지역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비함.
- 안 제13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,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

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민간참여를 적극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함.

-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,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수정·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9. 7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9. 21. 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35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규모화·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,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「FTA기금사업」으로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,
- 그 설치근거와 기능, 관리위탁,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시설의 명칭은 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”로 하고,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으로 함(안 제3조).
- 유통센터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·판매 등의 유통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지원, 농산물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함(안 제4조).
- 유통센터는 군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).
-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, 위탁 협약 및 취소, 위탁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).
-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기본적인 운영방법, 시설의 유지

· 관리에 따른 의무 및 책임, 휴·폐업 허가,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검사와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).

- 그 밖에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의 범위, 위탁신청, 운영주체의 선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둠(안 부칙 제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,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, 그 설치근거와 기능, 관리위탁,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이 조례안은 총 5장 43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은 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”로 하고,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에서 유통센터는 군이 직접운영하거나 생산자

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위탁운영 할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운영 주체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, 위탁 협약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기본적인 운영방법, 시설의 유지·관리에 따른 의무 및 책임, 휴·폐업 허가,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검사와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부칙 제2조에서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의 범위, 위탁신청, 운영주체의 선정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FTA기금사업」으로 거창군·함양군·

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9. 7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9. 21. 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36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가뭄 및 시설노후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체 수원개발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식수공급.
- 공기업전출금 일부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예산 이용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유

- 공사중인 현장 주민 요구사항 증가(추가물량 증가)
 -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마을 배수시설, 확·포장 등 요구

- 1회 국비 추경분(4,000백만원)에 대한 군비부담금(4,000백만원) 미확보로 사업 추진애로 및 국비분(4,000백만원) 반납 우려
-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가 요구 : 37개소

나. 예산 집행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현황				계약(원인)금액	잔액	비고
계	본예산	이월	추경			
13,297	1,057	3,214	9,026	13,200	97	추경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제외

다.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확보계획

-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일부 예산을 이용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우선 사용 주민불편 해소
 -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→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예산 이용
- 이용금액 : 1,000백만원
- 예산이용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
 - 전출금(일반회계) 이용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변경 : 추경시
 - ※ 이용사업 : 강북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(5,200백만원)
 - 미확보 예산 및 공기업 전출금 변경금액 : 추경 또는 '10년도 당초예산 확보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가뭄 및 시설노후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체수원 개발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

식수를 공급하고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부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예산 이용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것임.

- 이용 승인요구 사유에 대하여는 제1회 국비 추경분(4,000백만원)에 대한 군비부담금(4,000백만원)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및 국비분(4,000백만원) 반납 우려가 있으며,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마을 배수시설, 확·포장 등 공사중인 현장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추가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-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이용사업인 강북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(5,200백만원)의 추진현황과 미확보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